

2026. 2. 2.(월) 10:30 이후부터 보도 가능하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권내건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6. 2. 2.(월)

제목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

- '25. 9.~'26. 1.까지 5개월 간 52명 기소 (6명 구속, 46명 불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5. 9.~'26. 1. 5개월 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밝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고,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주요 수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하여 **제분 6개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26. 2. 2. 처분)
- ②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개 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3조 2,715억 원)을 수사하여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25. 11. 26. 처분)
- ③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6,776억 원)을 수사하여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26. 1. 20. 처분)

●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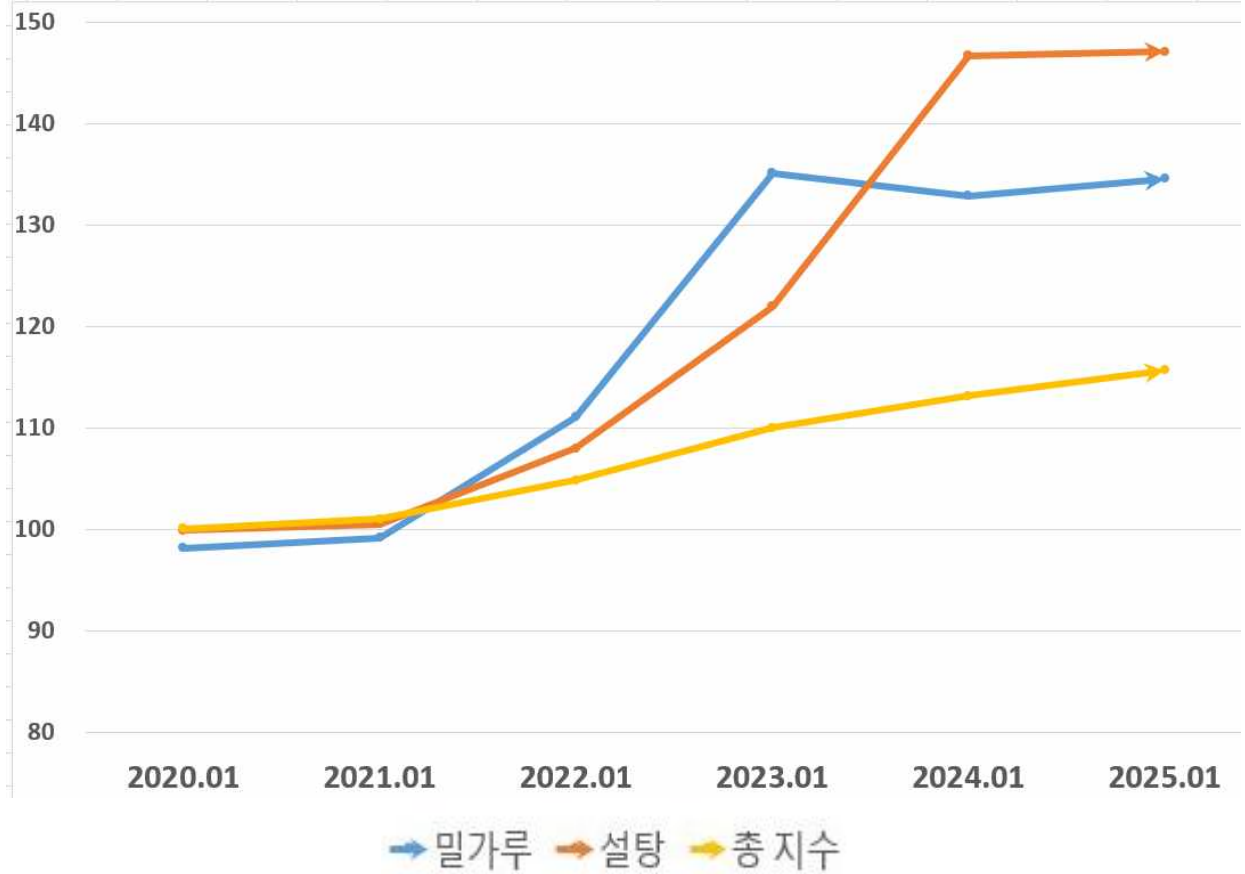
국민 생활물가 전반을 뒤흔든 민생 교란사범 신속 엄단

- 최근 기초 생필품 물가 불안정으로 시중에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크게 회자될 정도로 국민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어, 검찰은 이런 물가 전반을 뒤흔드는 생필품 물가 왜곡이 각 기업들의 담합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격 수사 착수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5. 9.~’26. 1. 약 5개월 간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 수사 개시 각 2~3개월 만에 법인 외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 행위자들인 대표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여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담합 범행으로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민생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

구분		설탕 가격 담합	한전 입찰 담합	밀가루 가격 담합
사안 개요	담합 기간	4년 2월 (‘21. 2. ~ ‘25. 4.)	7년 6월 (‘15. 3. ~ ‘22. 9.)	5년 9월 (‘20. 1. ~ ‘25. 10.)
	담합 규모	3조 2,715억 원	6,776억 원	5조 9,913억 원
	담합 가담 업체	제당사 3곳	전력업체 10곳	제분사 7곳
수사 경과	수사단서	자체 첩보	공정위 고발 (법인 7곳)	자체 첩보
	강제수사 착수일	‘25. 9. 17.	‘25. 10. 15.	‘25. 12. 11.
	사건처분	‘25. 11. 26.	‘26. 1. 20.	‘26. 2. 2.
	수사기간	71일	104일	47일
	처분결과	2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총 13명, 법인 2곳, 개인 11명)	4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총 19명, 법인 8곳, 개인 11명)	20명 불구속 기소 (총 20명, 법인 6곳, 개인 14명)

○ 또한, 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담합에 가담한 법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한 식료품 물가 및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밀가루 · 설탕 소비자 물가지수 비교]



[한국전력공사 입찰담합 사건]

입찰 담합기간 中 평균 낙찰률		입찰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	
일반경쟁입찰 ('15. 3. ~ '22. 9.)	지역제한입찰 ('19. 4. ~ '21. 10.)	1년간 평균 낙찰률 ('23. 5. ~ '24. 5.)	현재까지 평균 낙찰률 ('22. 9. ~ '25. 2.)
96.33%	96.95%	73.61%	67.03%
⇒ 최대 약 30% 낙찰률 차이 발생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통해 낙찰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피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을 초래

II

주요 수사 사례

1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 (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하여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

가. 사안의 개요

○ (피고인) 제분사 법인 6곳, 대표 및 임직원 14명 (총 20명)

- [A법인] 가○○(대표), 나○○(영업본부장), [B법인] 다○○(前 대표), 라○○(前 대표), 마○○(前 영업상무), 바○○(前 영업상무), [C법인] 사○○(前 대표), 아○○(前 부사장), 자○○(前 영업상무), 차○○(前 영업상무), [D법인] 카○○(대표), [E법인] 타○○(대표), [F법인] 파○○(회장), 하○○(영업상무)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 1.경부터 '25. 10.경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공정거래법위반】**

※ 피고인별 세부 범죄사실은 [별지] 참조

나. 수사 경과

- '25. 11. 26. 서울중앙지검, 사건 접수
- '25. 12. 11.~ 제분사 5곳 및 사건관계인 압수수색 등
- '26. 1. 20. 공정위 고발장 접수(1차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법인 3곳, 개인 9명)
- '26. 1. 21. 및 23. 가○○, 나○○(A법인 대표와 영업본부장), 다○○, 라○○(각 B법인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 법원 영장기각 주요 사유: 범행 자백하고, 증거 대부분 수집되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없음
- '26. 1. 29. 공정위 고발장 접수(2차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법인 4곳, 개인 5명)
- '26. 2. 2. 제분사 6곳 및 개인 14명 불구속 기소

다. 수사 의의

○ 신속한 수사를 통한 제분업계 담합 실체 규명

- 검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본건 담합의 실체를 신속히 확인하였고, 강제수사 착수 후 약 40여일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외 제분사 대표들이 관여된 구체적인 담합의 실체를 확인함
- 담합을 직접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 담합 범행의 최종책임자인 7곳 제분회사 대표이사들의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하여, 그중 가담 정도가 중한 총 14명의 개인에 대하여, 공정위에 2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음

○ 생활필수품인 밀가루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 범행 엄벌

- 제분 7개 사는 6년의 장기간 동안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의 폭과 시기를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
- 범행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되었다가(23. 1. 기준), 그 후로도 담합 前 대비 22.7%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25. 7. 기준)

< 밀가루 가격 변동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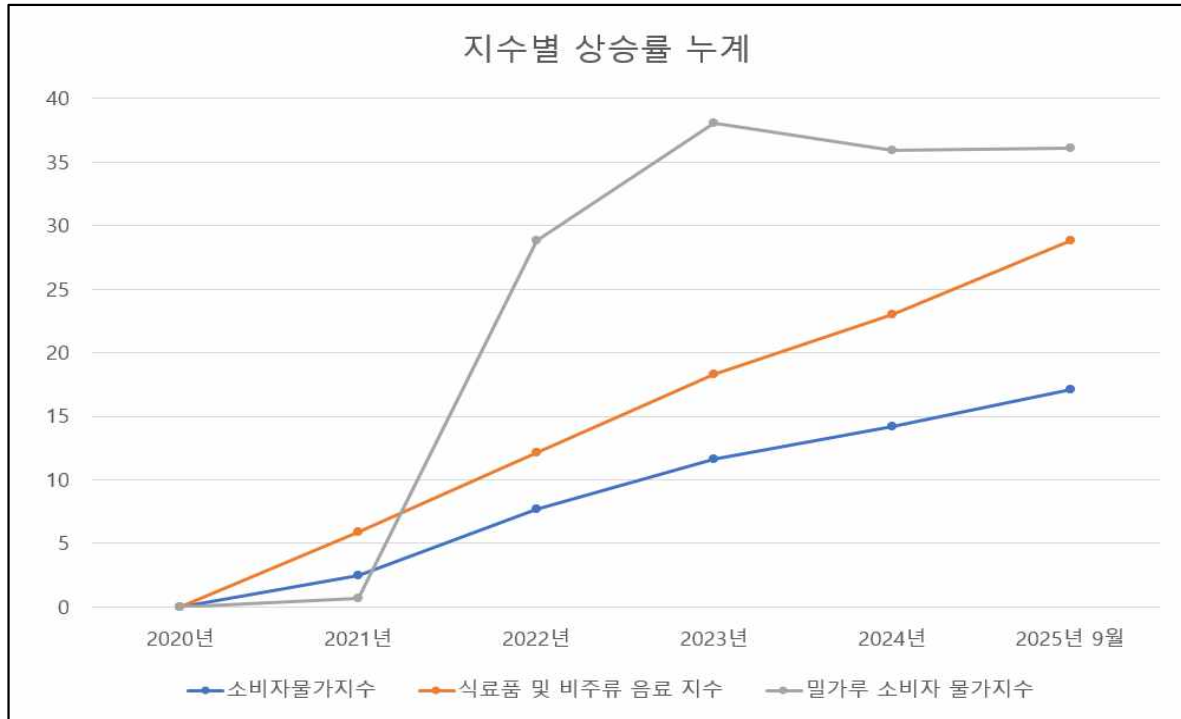
일시	21. 1.	21. 7.	22. 1.	22. 7.	23. 1.	23. 7.	24. 1.	24. 7.	25. 1.	25. 7.
판매가격 (1kg당)	649원	674원	745원	882원	924원	862원	838원	809원	796원	796원
변동폭 (1kg당)	-	25원↑	71원↑	137원↑	42원↑	62원↓	24원↓	29원↓	13원↓	-
'21년 대비 인상율	-	3.9%↑	14.8%↑	35.9%↑	42.4%↑	32.8%↑	29.1%↑	24.7%↑	22.7%↑	22.7%↑

- 특히, '20년~'25년 9월 기준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소비자 지수는 36.12%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20년~'25년 9월 기준 소비자 물가 17.06%,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28.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물가지수 비교>

일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100.00	102.50	107.72	111.59	114.18	117.06	17.06%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100.00	105.89	112.15	118.29	122.87	128.82	28.82% ↑
밀가루 소비자 물가지수	100.00	100.67	128.83	138.05	135.90	136.12	36.12%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유관기관인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력

- 밀가루 가격담합 사건으로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와 고발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
- 또한, 본건 관련 행정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의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고자 본건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송부하는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도 협의
- 앞으로도 검찰은 생활필수품 등 국민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

②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 3곳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3조 2,715억 원)을 수사하여 **13명(2명 구속, 11명 불구속) 기소**(’25. 11. 26. 처분)

※ ’25. 11. 26.자 보도자료 배포

가. 수사 개요

-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

나. 수사 의의

- 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필수 식료품인 설탕 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사실, ② 담합 발생 前 대비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된 사실, ③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 하락 시에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당사가 그 이익을 취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사실을 명확히 규명¹⁾
-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았던바,
 -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2개월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外 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후 그중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
 - 또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에公所장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담합 범행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력 제고에 기여

1) 제당 3사는 ’21. 1. 기준 원당가 386원이 ’23. 10. 기준 801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720원에서 1,200원으로 신속히 인상한 반면, ’23. 10. 기준 원당가 801원이 ’25. 4. 기준 578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1,200원에서 1,120원으로 소폭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제당 3사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

③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 (담합 규모: 6,776억 원)을 수사하여 19명(4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26. 1. 20. 처분)

※ ’26. 1. 20.자 보도자료 배포

가. 수사 개요

- ’15. 3.부터 ’22. 9.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관련 시장 약 90%를 점유²⁾하고 있는 4개사를 포함한 총 10개 법인이 가담한 담합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각 불구속 기소

나. 수사 의의

- 본건은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 전부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납품이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가격까지 공유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7년 6개월 간 145건(6,700여억 원 규모)에서 담합이 계속 되었고, ② 담합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③ 결국 부당이득액은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사실을 명확히 규명
 -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담합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상위 업체 4개사 임직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
 - 또한, 본건 관련 공정위 행정소송과 한국전력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바, 검찰은 공정위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송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였음

2) 2020년~2024년까지의 점유율 기준

Ⅲ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한 제언

① 담합 가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

○ 이 사건 사업자들은 과거 공정위의 수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담합 범행을 답습하며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왔는바, 담합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범행을 실제 실행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법인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 처분만으로는 담합을 실제 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전혀 위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은 해당 물품의 관련 비용으로 처리되어 가격 상승의 황당한 결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재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

※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2006. 밀가루 가격 담합 시 적발되었던 개인이 그 당시 아무런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며 대표이사까지 되었고, 또 다시 본건 담합범행을 저질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음

○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위주의 행정제재는 행위자가 아닌 사업자(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법인의 '비용' 증가로 취급되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

② 담합사건 법정형 상향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법정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담합을 처벌하는 해외 주요국의 법정형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준임

국가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관한 법정형
미국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2,000만 원) 이하 벌금
영국	징역 5년 이하 또는 (무제한의) 벌금
캐나다	징역 14년 이하 또는 (무제한의) 벌금
호주	최대 징역 10년 및 66만 호주 달러(한화 약 6억 6,000만 원) 이하 벌금
덴마크	6년 이하의 징역 및 20만 크로네(한화 약 4,600만 원) 이하 벌금
루마니아	5년 이하의 징역 및 20만 레우(한화 약 6,700만 원) 이하 벌금
일본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만 엔(한화 약 4,700만 원) 이하 벌금

※ 담합 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 범죄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계나 실무 입장도 多數

- 특히,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적극적 처벌을 통해 반독점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미국은 반독점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개인의 수가 법인보다 월등히 많으며(2016.~2025.기준 개인: 275명, 법인: 91개³⁾), 개인 54.6%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음(2015.~2024. 10년 간 판결이 선고된 개인의 수는 260명으로, 이 중 142명에게 실형이 선고, 평균 구금 일수 296일⁴⁾)
-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기반하여 담합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

3] 자진신고 정보 유관기관 간 공유 필요

- 현재 담합 관련 자진신고는 검찰과 공정위 모두에 가능한바, 담합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사 대상 기업의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자진신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선 조사 착수 기관을 실시간 협의하는 등 외국의 유사 모델⁵⁾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실무상 확인하였음
- 향후 대검찰청은 물론 유관기관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공유 방식과 세부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여,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력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임

IV 향후 계획

- 향후에도 검찰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고가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도 엄정히 살펴보고, 담합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임
- 또한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을 울리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음 ☑

3)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홈페이지, 「Criminal Enforcement Trends Charts」 (2025. 12. 4.) 자료 참고 (<https://www.justice.gov/atr/criminal-enforcement-fine-and-jail-charts>)

4)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2025. 1. 17.자 보도자료 「Antitrust Division Releases 10-Year Workload Statistics Report」 자료 참고(<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antitrust-division-releases-10-year-workload-statistics-report>)

5)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 간 업무조정 절차(Clearance)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우선 조사 착수기관을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있음, 미국 반독점국 사법매뉴얼(Justice Manual) 7-1. 400 등 참조 (<https://www.justice.gov/jm/jm-7-1000-policy#7-1.400>)

별지

주요 범죄사실 요지

구 분		범죄사실 요지	비고
A사 (3명)	가○○ (대표이사)	'20. 1.~'25. 10. 제분업체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나○○ (영업본부장)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A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B사 (5명)	다○○ (前 대표이사)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라○○ (前 대표이사)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마○○ (前 영업상무)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바○○ (前 영업상무)	'22. 12.~'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B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C사 (5명)	사○○ (前 대표이사)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아○○ (前 부사장)	'22. 4.~'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자○○ (前 영업상무)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차○○ (前 영업상무)	'22. 12.~'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C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D사 (2명)	카○○ (대표이사)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D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E사 (2명)	타○○ (대표이사)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E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F사 (3명)	파○○ (회장)	'25. 1.~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하○○ (영업상무)	'20. 1.~'25.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F사	'20. 1.~'25. 10.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